■ 도서관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12.8.17>

도서관 [ ] 등록 / [ ] 변경등록 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0일

도서관의 종류	[ ] 공공도서관 [ ] 작은도서관 [ ] 장애인도서관 [ ] 병원도서관 [ ] 교도소도서관 [ ] 어린이도서관 [ ] 전문도서관	
설 립 자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명 칭		
소 재 지		전화번호

※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등록번호	제 호	등록년월일
변경사항	변경 전	
	변경 후	

[ ] 「도서관법」 제31조제1항과 제4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[ ] 「도서관법」 제31조제2항과 제4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자치구의
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도서관 시설명세서(별지 제14호서식) 1부	수수료 없음

297㎜×210㎜[백상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설립자가 법인・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・단체의 명칭을 적고,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・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.

처 리 절 차

신고서 작성	➔	접 수	➔	확인	➔	결 재	➔	등록증 발급
신고인		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・군・자치구 (도서관 담당부서)		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・군・자치구 (도서관 담당부서)		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・군・자치구 (도서관 담당부서)		